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예술기록의 보존·활용 시책 수립·추진 >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26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4. 7. 15.

다. 회 부 일 : 2024.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잘 관리된 문화예술기록물은 관련 연구자 뿐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 창작의 기반이자 국민의 향유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럼에도 주로 민간 영역에서 생산되는 문화예술자료의 상당 부분이 단체의 영세성, 전문인력의 부재로 안정적인 수집과 보존이 어려우며, 특히 원로 예술가들이 작고하면서 소장자료를 기증할 곳이 없어 근현대 주요 예술자료들의 망실이 우려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산재된 문화예술자료의 망실을 막고 체계적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의3 및 제18조제11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문화예술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8조제11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 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 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u>제4조의3(문화예술기록의 보존과 활</u> <u>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u> <u>술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보존·</u> <u>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u> <u>립·추진하여야 한다.</u>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문화예술기록물의 수집·보존·</u> <u>활용</u>

2. 검토의견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에 따르면 보존 가치가 있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문화예술기록물의 경우 수집·보존 활용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폭넓게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기록물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아르코예술기록원을 운영하고 문화예술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아르코예술기록원 운영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문예기금)	사업수행기관	주요 사업
'22년	4,7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 수집 및 보존(구술채록, 공연영상화, 시각화서비스 등), 열람실 운영, 예술기록 디지털화
'23년	3,864		
'24년	3,36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 2)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아르코예술기록원 외에도 한국영상자료원, 국립예술자료관,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아카이브, 국립현대미술관 도서자료실 등의 기관들이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기록물의 아카이빙 및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처럼 문화예술기록물과 아카이브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문화예술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는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특히 공공기록물이 아닌 민간의 문화예술기록물의 경우 수집·보존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부재하여 주요한 문화예술기록물들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실정이라고 하겠음.

개정안은 문화예술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는 문화예술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이 생산·소장하고 있는 산재된 문화예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하도록 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현행법에는 ‘문화예술기록물’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정보에 한해 ‘기록물’로 정의하고 있어 동법의 정의로 문화예술기록물의 정의를 인용하거나 유추하기에는 민간의 문화예술 기록물을 관리 대상으로 포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화예술’³⁾에 포함되지 않는 공연·무용 등 영상이나 구술채록 등 예술인 관련 자료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미술진흥법」⁴⁾의 입법례와 같이 정의 조항 신설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미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이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미술기록물”이란 미술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 중 보존할 가치를 지닌 기록을 말한다.